

의안번호	2216200
의 퇴 인	장철민 의원
회 답 일	2026. 7. 14.
추 계 번호	26A0357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제정안에 따라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538억 2,700만원(연평균 107억 6,500만원)으로 추계됨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국립박물관단지 국립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운영지원센터)의 건립 규모, 직원 채용 및 운영 현황 등을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건립 규모 및 공사기간, 임직원 채용 규모 및 시기, 예산 편성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의 발생연도 및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건축비	1,172	12,924	12,924	—	—	27,020	5,404
운영비	—	—	—	13,321	13,455	26,777	5,355
이사회 설치·운영비	—	—	—	6	6	12	2
설립위원회 설치·운영비	6	6	6	—	—	18	4
합 계 (안 제1호·제3호·제6호·제7호·제11호·제13호, 부칙 제2호)	1,178	12,930	12,930	13,327	13,461	53,827	10,765

주: 1. 유사 사례(국립박물관단지 국립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운영지원센터)의 건립 규모, 직원 채용 및 운영 현황 등을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건립 규모 및 공사기간, 임직원 채용 규모 및 시기, 예산 편성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의 발생연도 및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하여 미래첨단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3조(법인격)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6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2. 박물관자료(미래첨단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부설기관의 운영·관리 7.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8. 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0. 그 밖에 미래첨단산업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무규정
4	안 제7조(임원)	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고,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무규정
5	안 제11조(이사회)	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안 제12조(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7	안 부칙 제2조(설립준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박물관의 관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담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박물관의 설립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조(목적)	○	○ 박물관 건축비, 운영비, 이사회 설치·운영비, 설립위원회 설치·운영비로 구분하여 추계 - 단, 부지 매입비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3조(법인격)		
3	안 제6조(사업)		
4	안 제7조(임원)		
5	안 제11조(이사회)		
6	안 제12조(재원)		
7	안 부칙 제2조(설립준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은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박물관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으므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최근 국립박물관 건립사례로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국립어린이박물관(2023.12. 개관) 건립 및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운영 사례를 유사사례로 참고함

- 안 제12조에 따라 박물관의 설립·운영 재원은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안 제14조에 따른 차입금,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박물관 건립비 및 초기 운영비를 전액 국가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함
- 박물관의 설립에 따른 비용은 건축비, 운영비, 이사회 설치·운영비, 설립위원회 설치·운영비로 구분하여 추계함
 - 건축비는 공사비와 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성되며, 박물관 건립 부지가 정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부지 매입비는 추계대상에서 제외함
 - 2027년에 부지 매입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29년 완공하며, 2030년에 인력을 채용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박물관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함
 - 설립위원회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한 명목임금상승률, 기관부담요율, 자산취득비를 적용함
- 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박물관 건축비

- 건축비는 국립어린이박물관 건립 사례를 참조하여 공사비와 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구분하여 추계함
- 공사비는 연면적에 전시시설 건립 공사의 평균 공사비 단가를 곱하여 산출

- (연면적) 국립어린이박물관 연면적(4,891㎡)을 참고하여 박물관의 연면적을 4,900㎡로 가정
- (공사비 단가) 전시시설 공사비 단가는 조달청(공사비정보광장)에 따른 전시시설(철근철골콘크리트구조)의 단위면적당 공사비 단가 평균 446만원/㎡ (2024년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¹⁾에 최근 3년간 비주거용 건물의 건설공사비지수 연평균증가율(2.3%) 적용²⁾
 - 공사비의 연부액 비율은 「20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2028~2029년까지 50:50으로 적용

□ 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에 공종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 (설계비 요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참고하여 「건축사법」 제19조의3제1항³⁾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 건축설계 대가요율의 제3종(복잡), 도서의 양 상급 기준을 적용하여 건축비 200억원에서 300억원 사이 구간의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산정한 설계비 요율 5.38% 적용
- (감리비 요율)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⁴⁾에 따라

1) 2024년 전시시설 공사비 사례

공사명	연면적(㎡)	공사비(백만원)	단위면적당공사비(원/㎡)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건축공사	8,964	33,533	3,740,663
4.16 생명안전공원	7,375	36,577	4,959,523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공사	1,972	9,256	4,693,200
평균	—	—	4,464,462

자료: 조달청(공사비정보광장, 유형별공사비)

-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공사비지수」)에서 제공하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2023~2026년(5월기준)까지 평균 상승률 2.3% 적용
- 3)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4)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①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별표 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동 사업은 총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서 건설사업관리(舊 책임감리) 등의 시행 대상에 해당되므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책임감리 요율의 복잡한 공종을 적용하고, 건축비 200~300억원 구간에서 직선보간법을 이용하여 산출한 감리비 요율은 8.44% 적용

- (시설부대비 요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건설부문 요율(0.23%)을 적용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박물관의 건축비는 2027년에 11억 7,200만원 등 2027~2029년에 총 270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2] 박물관 건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공사비	-	11,979	11,979	-	-	23,959
설계비	1,172	-	-	-	-	1,172
감리비	-	920	920	-	-	1,839
시설부대비	-	25	25	-	-	50
합계	1,172	12,924	12,924	-	-	27,02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박물관 운영비

□ 박물관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인건비, 자산취득비, 기본경비, 사업비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박물관 건축 완료 후인 2030년에 인력 채용 및 운영을 시작하는 것으로 가정

- (직원 수)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인력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44명 규모로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제정안에 따라 2명의 임원을 두고, 직원 40명과 운영직 2명을 두는 것으로 가정

별표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18. 전시시설공사

- 안 제7조에서 박물관의 임원으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와 비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 중 직원 인건비는 관장 1
명과 상임이사 1명에 대하여 추계
 - ▶ 비상임이사과 비상임감사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은 본 비용추계서의 ‘다. 박물관
이사회 설치·운영비’ 항목을 참고
 - 참고로, 지원센터는 1본부 1단 4실 8부 정원 44명(임원 2명, 관리직 21명, 전문
직 18명, 운영직 2명)으로 운영
 - (인건비) 인건비는 박물관 직원 수(44명)에 대한 1인당 평균 인건비에 국
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하고 기관부담금과 퇴직금 적립
액을 산출
 - (보수) 박물관 직원 수에 직종별 직원 1인당 보수를 곱하여 산출
 - ▶ 지원센터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2026년 기준 임원 1억 2,450만원, 직원
6,400만원, 운영직 3,200만원으로, 직급별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
임금상승률 적용
 - (기관부담금)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인건비 기관부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전망 적용
 - (퇴직금 적립) 보수에 퇴직금 적립비율(=1/12) 적용
 - (자산취득비)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자산취득비를 적용하고 직원을 신규 채
용하는 2030년 1회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 (기본경비·사업비) 지원센터 사례의 인건비 대비 비율을 적용
 - 2026년 지원센터의 인건비(3,438백만원) 대비 기본경비(3,073백만원) 비율: 89.4%
 - ▶ 기본경비에는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운영비 등을 포함
 - 2026년 국립어린이박물관의 인건비(3,438백만원) 대비 사업비(4,762백만원) 비율:
138.5%
- 추계결과, 박물관 운영비는 2030~2031년에 총 267억 7,700만원이 소
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3] 박물관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인건비	-	-	-	3,961	4,104	8,065
자산취득비	-	-	-	333	-	333
기본경비	-	-	-	3,541	3,669	7,210
사업비	-	-	-	5,486	5,683	11,170
합 계	-	-	-	13,321	13,455	26,77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박물관 이사회 설치·운영비

□ 박물관 이사회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은 회의 참석수당과 운영비를 포함한 회의 개최비용으로 하며, 2030년부터 2031년까지 총 1,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

- 이사회 회의 수당 지급 대상은 안 제7조에서 규정하는 임원 중 비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감사 1명으로 가정하고, 박물관 운영이 시작되는 2030년부터 이사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함
- 이사회 회의는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한 개최비용 단가는 기획예산처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⁵⁾을 고려하여 1인당 1회 25만원으로 가정함

[표 4] 박물관 이사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이사회 설치·운영비	-	-	-	6	6	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자료 인쇄비, 참석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여 대면회의 1회에 25만원으로 가정(서면회의의 경우 15만원으로 가정)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라. 박물관 설립위원회 설치·운영비

- 안 부칙 제2조에 따라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1,8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국립어린이박물관 설립위원회 사례에 따라 5인(위촉위원 4명, 당연위원 1명)의 설립위원이 연간 6회의 회의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회의 참석수당과 운영비를 포함한 회의 개최비용은 회의 1회 당, 위촉위원 1인당 최대 2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5] 박물관 설립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설립위원회 설치·운영비	6	6	6	-	-	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 사례(국립박물관단지 국립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운영지원센터)의 건립 규모, 직원 채용 및 운영 현황 등을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 실제 건립 규모 및 공사기간, 임직원 채용 규모 및 시기, 예산 편성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의 발생연도 및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박선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선아	02-6788-4652	sunapark@assembly.go.kr